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예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홍길동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생년월일(성별) 1900. 00. 00. 남/여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경기도 00시 00구 00대로12번길 34, 000동 0000호 전자우편주소 user_id@domain.com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팩스번호 031-123-4567
2 청구 내용	(예시) 20XX년 0월 00일 오후 3시경 00시 00읍 123-45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구급활동일지, 화재조사보고서	
3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V]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3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V]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4 수수료	[] 감면 대상임 [V]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XX년 00월 00일

청구인 **홍길동** (서명 또는 위)

(경기도지사) 귀하

접수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직인

유의사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 (재활용품)]

< 청구인 정보 필수 작성사항 >

- 개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 외국인 :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법인·단체 : 법인·단체명(대표자 성명),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 ※ 모든 경우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중 1가지 이상 필수 작성해야 합니다.

< 청구 내용 >

- 청구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시 목설, 폭언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청구신청이 불가합니다.
- 작성 가능한 공간을 초과한 내용 작성 시 별지에 작성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 방법 >

- 열람/시청 : 처리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자료를 열람
- 사본/출력물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자료를 종이 출력물로 제공
- 전자파일 : 전자파일로 정보공개 내용을 제공
- 복제/인화물 : 오디오 또는 비디오 자료 등의 복제/인화물 확인

< 수령 방법 >

- 직접방문 : 처리기관에 직접 방문 수령
- 우편 : 청구인 정보에 작성된 주소로 우편물 수령
- 팩스 : 청구인 정보에 작성된 팩스번호로 정보 수령
- 정보통신망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확인
- 전자우편 : 청구인 정보에 작성된 전자우편주소로 정보 수령

< 수수료(상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참고 및 유의사항 >

1. 정보공개 청구 시,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대전화, 메일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정보공개 처리정보가 타인에게 발송될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광범위한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높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정보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청구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예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번호)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7.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